

의안번호	제 951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1월 일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1
----------	-----

발의연월일 : 2022년 월 일

발 의 자 : 황규철,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연철흙, 전원표,
이상식

1. 제안이유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추진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 환경 변화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2022.1.6. ~ 2022.1.12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내연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2.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동차정비사업자
2. 종사자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사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자동차 정비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개선 사업비와 정비 신기술 직무 교육비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 관련조문

- 안 제5조(지원사업)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원동기, 전문)에 필요한 시설개선 지원비 / (1개소당 150만원) 적용
 - 100개소당 1.5억원(도0.45, 시군1.05) 필요(시군과 30:70 비용 부담)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원동기, 전문)에 필요한 직무교육비 / (1인당 50만원) 적용
 - 100인당 0.5억원(도0.15, 시군0.35) 필요(시군과 30:70 비용 부담)

나. 추계 결과 :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0억원 필요.

(매 1년 100개소, 100인 대상)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 시·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시설개선 지원사업	도비 (시설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시군비 (시설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직무교육 지원사업	도비 (교육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시군비 (교육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재 원 조 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자체 수입	소 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지방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세외수입						
시·군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특별회계							